

평생교육원 운영규정

개정 2019.04.17. 개정 2022.03.17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

본 원은 해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부속 평생교육원(이하 “본 원”이라한다)이라 칭한다.<개정 2012.06.11., 개정 2019.04.17.>

제2조 (목적)

본 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과 학생 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소재지)

본 원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25 해전대학교(캠퍼스) 내에 둔다.
<개정 2012.06.11.>

제2장 조 직

제4조 (원장)

- ① 본 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5급이상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시 원장은 따로 보직을 겸할 수 있다.<개정 2010.3.1.><개정 2016.05.25>
-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<개정 2010.3.1.>
- ③ 부속기관에서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일반기술직 6급 이상으로 보한다.<신설 2019.04.17.>

제5조 (교직원)

본 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원 업무를 관장한다. 교직원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며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2016.05.25>

제5조의 2 <삭제 2015.2.24.>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 <삭제 2019.04.17.>

- ① <삭제 2019.04.17.>
- ② <삭제 2019.04.17.>
- ③ <삭제 2019.04.17.>

제7조 <삭제 2019.04.17.>

제8조 <삭제 2019.04.17.>

- ① <삭제 2019.04.17.>
- ② <삭제 2019.04.17.>
- ③ <삭제 2019.04.17.>
- ④ <삭제 2019.04.17.>
- ⑤ <삭제 2019.04.17.>
- ⑥ <삭제 2019.04.17.>

제9조 <삭제 2019.04.17.>

제4장 설치과정

제10조 (학습기간)

본 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를 수시로 모집한다.

제11조 (학습일수)

본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12조 (지원자격)

본 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성별, 연령 및 학력상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. 다만, 설치과정의 성격에 따라 경력, 학력 등을 제한 할 수 있다.<개정2012.06.11.>

제13조 (선발방법)

본 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설치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.

제14조 (설치과정 등)

- ① 본 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10.3.1.>
- ②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4조(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)에 따라 대학부설 평

생교육원에서 운영규칙, 교육과정 등이 변경될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전문개정 2010.3.1.><개정 2012.06.11., 개정 2019.04.17.>

제15조 (학습비)

- ① 본 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.<개정 2010.3.1.>

제16조 (수료증 및 자격증 교부)<조문개정 2010.3.1.>

- ① 본 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% 이수한 자로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(별지서식 제1호)를 교부할 수 있다.
- ③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자격증 또는 인증서(별지서식 제2호)를 교부할 수 있다.<신설 2010.3.1.>

제5장 학습자 활동 및 포상

제17조 (자치회)

-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1인을 둔다.

제18조 (학습자 활동의 금지)

학습자는 본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, 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.

제19조 (포상)

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.

제6장 회 계

제20조 (회계년도)

본원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21조 (예산편성)

본 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.<전문개정 2010.3.1.>

제22조 (수입원)

본 원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- ① 학습비
- ② 해전대학교 보조금<개정2012.06.11.>
- ③ 위탁훈련 지원금(위탁훈련시)
- ④ 기타 수입

제23조 (예산 및 결산) <조문개정 2010.3.1.>

본 원의 회계업무는 해전대학교 예산 회계 업무 규정에 따른다.<전문개정 2010.3.1.>
<개정2012.06.11.>

부 칙

제1조 (준용규칙)

이 원칙 이외의 학사운영은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.

제2조 (시행일)

이 원칙은 199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(시행일)

이 원칙은 1992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4조 (시행일)

이 원칙은 199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5조 (시행일)

이 원칙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6조 (시행일)

이 원칙은 2003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0.02.0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원칙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06.0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원칙은 2012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5.02.2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5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6.05.25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학습비 반환기준 (법 제23조 제2항)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1. 제2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 의 경우		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 한 금액
2.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 (본인 의사로 포기)	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	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		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	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		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	반환하지 않음
	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수업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		*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*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	

<평생교육법시행령>

제23조(학습비의 반환 등)

①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·정지된 경우
2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

②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4.17.>

(별지서식 제1호) <개정 2012.06.11., 2019.04.17., 2022.03.17.>

제 0000 - 000 호

수료증

성명 :

생년월일 : 년 월 일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부속 평생교육원 00
0과정을(교육기간 및 총시간)수료하였음을 증명함.

년 월 일

혜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원장 000 (인)

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

혜전대학교 총장 ○ ○ ○ (인)

(별지서식 제2호) <개정 2012.06.11., 2019.04.17., 2022.03.17.>

제 0000 - 000 호

자 격 증(인증서)

성 명 :
생년월일 : 년 월 일

위 사람은 본대학교 부속 평생교육원 원칙 제16조 3항에
의거하여(자격증명)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혜전대학교 부속 평생교육원 원장 000 (인)

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

혜전대학교 총장 ○ ○ ○ (인)